

##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(전산)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(전산)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0일  
국무조정실장

### 1. 채용예정인원(1개 분야, 총 1명)

임용예정직급	채용분야	선발예정인원	채용기간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기간제근로자	전산	1명	채용일~ '24.12.31	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(세종특별자치시)

#### 가. 근무조건

- (신 분) 기간제근로자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- (계약기간) 채용일('24.6월예정) ~ '24.12.31
- (보 수) 2024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 - ※ (기본급) 월 206만원 내외
  - ※ (수당)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 등
  - ※ (보험)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 
\*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
- (근 무 지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,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
- (근무시간) 주 5일, 1일 8시간
  - ※ 업무 특성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, 휴일근무 가능(수당 별도 지급)

#### 나. 주요 업무 내용

채용분야	담당업무
전산	○ 청년DB(데이터베이스) 시스템 운영·관리 지원

## 2.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

### ① 응시자격요건 (기준 :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)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.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
\*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## ② 우대요건 (기준 : 원서접수 마감일)

우대요건	
기간제 근로자 (전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산 직무분야 경력 보유자 (연차별 차등 우대)</li> <li>○ 국내·외 대학의 전산 관련 직무분야 학위(전문학사 이상) 취득한 자 또는 전산 관련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자</li> <li>○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 (아래 자격증만 인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통신·정보처리·정보기술·정보보안 기능사 이상</li> <li>- PC 정비사 2급 이상</li> <li>- 네트워크관리사 2급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
< 관련용어 정의 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직무분야 경력 : 정부·공공기관, 민간기관에서 전산 시스템(홈페이지, DB 등)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근무경력</li> <li>■ 직무분야 학위 : 전산학, 정보통신, 컴퓨터공학, 멀티미디어 등 관련된 분야의 학위</li> </ul>	

## 3. 시험방법

### 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
  - ※ 서류심사 기준 : 자기소개서, 관련 분야 근무경력, 자격증 등
  - ※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,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
### ② 2차시험 : 면접전형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※ (평정요소)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,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  - ※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

## 4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4.5.20(월)~'24.5.29(수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
원서접수	'24.5.20(월)~'24.5.29(수)	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채용담당자 (전자우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4.6.4(화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4.6.11(화)	■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'24.6.13(목)	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## 5. 응시원서 제출

- 접수기간 : '24. 5. 20.(월) ~ '24. 5. 29.(수) 18:00
- 접수방법 : 관련 서류는 **e-mail로만 접수**(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)
  - e-mail: manager2030@korea.kr
    - ※ e-mail 제목은 반드시 "성명(전산)"로 기재 \* 예시: 홍길동(전산)
    - ※ 전자우편 접수는 **마감일('24.5.29.) 18:00까지** 도착분에 한함

## 6. 제출 서류 안내

- ※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
- 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

서류	비고
<b>I. 공통사항(필수제출서류)</b>	
1. 응시원서 1부 (별지 1호)	· 자필 서명 필수
2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2호)	· A4 2매 이내로 작성(형식·구성 자유)
3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3호)	· 자필 서명 필수

## Ⅱ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함)

<b>4. 경력(재직)증명서 1부</b> (별지 4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</li> <li>· 근무기간(연·월·일)·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,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</li> <li>·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</li> <li>·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(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)</li> <li>·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</li> </ul>
<b>5. 자격증 사본 1부</b>	
<b>6. 학위(졸업)증명서 사본 1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심사위원 제척·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</li> </ul>
<b>7. 주민등록초본 1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남성 지원자만 제출(병역 확인용)</li> </ul>

## 7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,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 청년정책관리팀 (☎ 044-200-19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
